

2026년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기업 모집 공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창업·벤처기업 등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나라' 추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26년 벤처나라 추천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13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1

개 요

- **사업목적** : 기술력이 우수한 센터 보육·지원기업 대상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지원대상**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지원 이력이 있는 벤처·창업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 **청년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기업
 - **사회적기업 등**
 -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 기업”
 -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
 -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자활기업”
 -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
 - 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의 요건을 갖춘 “장애인표준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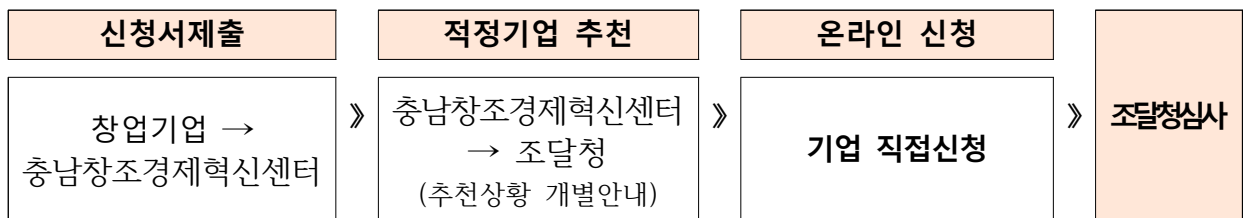
□ 벤처나라 지정시 이점

- 벤처나라제품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 가능), 인증마크 제공(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벤처나라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는 매년 예산사정 및 관련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벤처나라 등록업체 중 실적,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업체를 조달청이 자체 선별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2 추천기업 선정

□ 선정방법

- [붙임]신청서를 기반으로 추천자격 및 적격성 검토를 진행하고, 적정기업에 한해 기관추천 진행



□ 신청서 접수 일정

- 1차 접수 (8월 지정심사 대상 추천): 공고일 ~ 7월 20일
- 2차 접수 (9월 지정심사 대상 추천): 7월 27일 ~ 8월 17일
- 3차 접수 (10월 지정심사 대상 추천): 8월 31일 ~ 9월 21일
- 4차 접수 (11월 지정심사 대상 추천): 9월 28일 ~ 10월 19일
- 5차 접수 (12월 지정심사 대상 추천): 10월 26일 ~ 11월 16일

□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구분	항목	제출서류
[붙임1] 벤처나라 기관추천 신청서	서식1	벤처나라 추천기업 신청서
	서식2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서식3	후보기업 체크리스트
	첨부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자격증빙 등)
[붙임2] 상품설명서 외		상품설명서,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 품질관리계획서 등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접수: bk@ccei.kr
- 문의처: 041-539-7828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26년 벤처나라 지정신청 관련 안내사항》

- ① (지정신청하려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국내 OEM인 경우 지정 신청 및 상품등록 허용하나, 수요기관이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되어야 하며 직접생산이 없는 경우 주문 불가
- ② 창업기업확인서 첨부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제품으로 납품 가능

-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의한 신청 제외 대상은 지정신청 불가

신청 제외 대상 (제6조)

- ▷ 휴 · 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물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 상품
- ▷ 음 · 식료품류, 동 · 식물류, 농 · 수산물류, 무기 · 총포 · 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 ▷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나라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